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제 안 자 : 김광수의원(찬성자 9명)
- 제 안 일 : 2014년 4월 8일
- 회 부 일 : 2014년 4월10일

2. 제안이유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모여 협업과 교류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혁신의 거점인 '서울혁신파크'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및 관리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사회혁신의 거점인 '서울혁신파크'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 나. 서울혁신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혁신파크 내에 혁신 기관, 단체,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제9조).
- 다. 서울혁신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및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라. 서울혁신파크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혁신파크 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4조 ~ 제17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 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집행부와 협의하였음.

5.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번지 일대에 다양한 사회 혁신 주체들이 모여서 협업과 교류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혁신의 거점인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발의된 제정안임.
-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혁신파크에 대한 관리 및 위임의 위탁과 사용료 징수 등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에 대한 일반조례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할 수 있으나,
- 서울혁신파크 사업 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회 혁신을 추구하는 민간 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개별법령에 근거해야 할 법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총칙(제1장)	
규 정	주 요 내 용
제2조 (서울혁신파크 정의)	· 은평구 통일로 684 일대 등에 사회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일체의 시설
제3조 (서울혁신파크 기능)	· 사회문제에 대한 혁신적 해법 도출 · 새로운 혁신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 모델 연구 · 혁신 기관, 단체, 기업 등의 집약적인 육성체계 구축 · 사회혁신 성과에 대한 모델 확산 · 사회혁신에 대한 전시·체험 공간 및 기회 제공 등
제4조 (서울혁신파크 설치)	· 혁신을 창출하고, 확산하며, 체험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혁신 기관·단체·기업 입주 공간, 혁신도서관 및 혁신연구센터 - 중간지원조직, 어린이복합문화시설, 어르신복합문화시설 - 도시농업체험장, 숲체험장, 아케이드, 호텔 등

② 공유재산 사용료 등(제2장)

조 항	주 요 내 용
제7조 (사용료 면제 및 감면)	· 사회혁신 관련 행사 개최시 사용료 면제 · 혁신 관련 입주기관에 대한 사용료 감면(100분의 80 범위내)
제9조 ~ 제10조 (유치 및 입주 지원)	· 혁신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 입주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③ 관리·운영 위탁 근거 등 (제3장 관리·운영 위탁, 제4장 운영협의회)

조 항	주 요 내 용
제12조 (관리·운영 위탁)	· 서울혁신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및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
제14조 ~ 제17조 (운영협의회)	· 서울혁신파크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 ·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

- 서울혁신파크 부지관리 실태를 보면, 동 부지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관리기간이 2014년 3월에 만료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직영관리를 하고 있으며, 집행부는 서울혁신파크 조성 추진 일정 및 관련 조례안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감안하여 2015년부터 본격적인 운영 수탁 기관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음.
-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대한 공공행정 용도로서의 활용 수요가 높음에 따라 집행부는 동 부지를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2014년 4월 1일)하였음.
- 서울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구성을 위해 2014년 1월부터 서울혁신파크 운영협의회를 잠정 운영하고 있는 바, 집행부 공무원(서울혁신기획관 등 4명)과 중간지원조직(마을공동체지원센터, 청년일자리허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민간전문가(6명)가 참여하고 있음. 서울혁신파크 부지의 활용현황은 다음과 같음.

① 서울혁신파크 활용현황

구 분	활용면적	이용 부서, 기관, 단체	비 고
계	28,776㎡		
공공목적 활용	12,239㎡	일자리정책과 등 12개 부서, 기관	무상사용
민 간 임 대	16,537㎡	(주)드림네트웍스 등 18개 단체	유상대부

② 중간지원조직 입주현황

기 관 명	입주시기	사용면적	주 관 부 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12. 9월	1,282㎡	마을공동체담당관
인생이모작지원센터	'12.11월	1,679㎡	어르신복지과
청년일자리허브	'13. 3월	1,882㎡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3. 3월	1,487㎡	사회적경제과
크리에이티브랩	'13. 4월	745㎡	경제정책과

※ '16년까지 직장맘지원센터 등 6개 중간지원조직 추가 입주 예정임

가. 서울혁신파크 기능 및 설치

제정안 제3조 및 제4조

제3조(기능) 서울혁신파크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문제에 대한 혁신적 해법 도출
2. 새로운 혁신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 모델 연구
3. 혁신인재 양성 및 그에 필요한 지원체계 구축
4. 혁신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의 집약적 육성체계 구축
5. 사회혁신 성과에 대한 모델의 국내·외 확산
6. 사회혁신에 대한 전시, 체험 공간 및 기회 제공 등

제4조(설치) 서울혁신파크 내에는 혁신을 창출하고, 확산하며, 체험할 수 있는 시설 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설의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혁신 기관, 단체, 기업을 위한 입주 및 교류 공간
2. 혁신도서관, 혁신연구센터
3. 서울특별시 중간지원조직 입주 공간
4. 어린이복합문화시설, 어르신복합문화시설
5. 도시농업 체험장, 숲 체험장 및 혁신 체험시설
6. 아케이드, 호텔 등 편의 및 부대시설
7. 기타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서울혁신파크의 조성 계획을 보면, 서울혁신파크 기능 수행을 위한 공간과 시설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열린 공간을 창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음.

- 그러나 복합문화시설 및 도시농업체험장 등의 시설과 호텔 등의 부대시설이 서울혁신파크의 기능 수행에 있어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특히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일반재산이 아닌 행정재산인 바,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용도상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텔 등 부대시설 운영을 위해 동 부지가 제공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집행부는 부지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지의 일부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생략)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나.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제정안 제7조

제7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 (생략)

②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는 혁신 기관, 단체, 기업에 대하여는 법령·조례 등에서 정한 요율의 100분의 80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정조례안은 사용료 감면 조항을 통하여 사용료의 요율을 100분의 80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및 제26조(대부료의 요율)에 따른 경우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사용료율을 적용해야 하나, 제정안을 적용할 경우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사용료율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참고자료-① 참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는 사용료율(대부료율 포함)을 정책 목표 및 사용목적의 공익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율을 구체적으로 요율별로 구분하고 있으나, 금번 제정조례안은 그러한 제한 없이 규칙으로 포괄 위임하고 있음.
- 사용료율은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중요사항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규칙으로 위임함에 있어서 구체적 범위를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결 론

- 민간위탁은 개별법령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명확성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제정조례안의 제정 의의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조문상 ‘사회혁신’이라는 용어는 법적 측면에서 불확정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앞으로 행정집행과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통해 구체적 기준과 내용이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사회혁신’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자의적 행정집행의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 서울혁신파크내에 서로 성격이 다른 시설물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바, 사회혁신이라는 목적으로 그 시설물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기능 조정 및 배치 등에 있어서 통합적 관리 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2조 및 제26조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립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 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주한외국공관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③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 제39조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5.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의한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시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목축을 위한 대부의 경우
2.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서울특별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중소기업 창업·육성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

6. 서울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

7.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유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8.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매입한 한옥 등을 시장이 선정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

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학협력을 위해 설치한 DMC산학협력연구센터를 산학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또는 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외국연구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10.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1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문화예술 기관·단체나 개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화시설을 말한다)로 운영하는 경우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1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14.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⑥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서울혁신파크 부지



③ 서울혁신파크 부지 조성 계획



④ 기존 건물 활용계획



⑤ 전제 조감도

